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45
----------	-------

발의연월일 : 2026. 9. 22.

발 의 자 : 김성범 · 주철현 · 박정현
이춘석 · 문대림 · 이학영
한민수 · 윤준병 · 허영
이건태 · 김한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의 경영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자경농지·축사용지·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조합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농어업용 기자재 및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농어업 분야에 대한 과세특례 등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들 제도는 지원대상과 정책목적이 상호 연계되어 있음에도 적용기한이 2026년, 2028년 등 서로 다른 시점으로 정해져 있어 제도 이용자가 조세지원의 지속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각 특례의 존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검토도 서로 다른 시점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음.

이에 농어업 분야에 대한 주요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을 기

준으로 정비하고, 이에 연동된 저율과세 전환 시점도 함께 조정함으로써 조세지원제도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향후 농어업 분야의 조세지원 체계를 동일한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6조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2028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2028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8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8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8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29년”으로, “2026

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026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027년”을 “203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8년”을 “2030년”으로, “2029년”을 “2031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2029년”을 각각 “2031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030년”을 “2032년”으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29년”으로, “2026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026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027년”을 “203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8년”을 “2029년”으로, “2029년”을 “2030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2029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30년”을 “2031년”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8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8년”을 “2030년”으로 한다.

1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공식품

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될 것.

다만,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군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공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제도를
통해 한국산으로 원산지인증을 받은 것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6년”을 각각 “2030년”
으로 한다.

제116조제2항제3호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121조의23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한
다.

제121조의25제7항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
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
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
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2
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
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
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
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 ⑥ (생략)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
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 2. (생략)

⑧ ~ ⑩ (생략)

-----,

-----.

③ -----

-----20
30년-----

-----.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2030년-----

-----.

1. 2. (현행과 같음)

⑧ ~ ⑩ (현행과 같음)

③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20
30년-----

[illegible]

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생략)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으로 한정한다)에 제66조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66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

[illegible]

② (현행과 같음)

③ -----

2030년

④ _____

주자가 <u>2026년</u> 12월 31일까지	----- <u>2030년</u> -----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	-----
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	-----
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	-----
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
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식	-----.
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	-----
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	-----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
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	득세의 감면) ① -----
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	-----
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	-----
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	-----
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	-----
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③ (생략)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
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illegible]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 ① -----

(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④ (생략)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③ (생략)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
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2030년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
면) ① -----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

대한 비과세) -----

-2030년-----

1. ~ 3. (현행과 같음)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9

년-----

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2.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조합원·회원 등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29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

-----2030년-----

-----.

1. 2030년-----2030년-----

2. 2031년-----

② -----

-----2030년-----

-----2031년-----

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제2호 각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원천징수세율

가. 2029년 1월 1일부터 2029
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
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100분의 5

나. 2030년 1월 1일 이후 출
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 100분의 9

③ (생략)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울과세 등) ① 농민·어민,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
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
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
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

[illegible]

1. (현행과 같음)

2. -----

가. 2031년-----2031
년-----

나. 2032년-----

③ (현행과 같음)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울과세 등) ① -----

2029년-----

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u>2026년</u>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u>2026년</u> 1월 1일부터 <u>2026년</u> 12월 31일까지 가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5 2. <u>2027년</u>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거주자 중 제88조의 5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u>2028</u>	----- ----- ----- -----2 <u>030년</u>----- ----- ----- ----- ----- ----- ----- ----- -----. 1. <u>2030년</u>-----<u>2030년</u>----- ----- ----- ----- 2. <u>2031년</u>----- ----- ----- ② ----- ----- ----- -----<u>2029년</u>
---	---

2030년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illegible]

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1. ~ 13. (생 략)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
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2호는 2024년 12

-----.

1. ~ 13. (현행과 같음)

1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공식품

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될 것. 다만, 「군인복
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군 골프
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에 공급되는 경
우는 제외한다.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22
조의2제1항에 따른 원산지
인증제도를 통해 한국산으
로 원산지인증을 받은 것

② -----

-----.
-----2030년-----

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
에만 적용한다.

1. ~ 22. (생략)

③ ~ ⑤ (생략)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1. · 2. (생략)

1. ~ 2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consists of ten identical rows of three horizontal dashed lines each, designed to help children learn letter formation and alignment.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cross the entire page.

-----2030년-----

-----2030년-----

— — •

1. · 2. (현행과 같음)

② ~ ㉓ (생 략)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 (생 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인지세 면제 기일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2. (생 략) 3.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u>2026년</u>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 문서에만 적용 4. (생 략)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⑨ (생 략)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에 대해서는 <u>2026년</u>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2. (생 략) ⑪ (생 략)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⑦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u>2026년</u>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	② ~ ㉓ (현행과 같음)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2. (현행과 같음) 3. ----- -----<u>2030년</u> ----- ----- 4.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 ----- -----<u>2030년</u>----- -----. 1. 2. (현행과 같음) ⑪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u>2030년</u>----- -----
---	---

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으로서 <u>2026</u>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3. (생략) ⑨ (생략)	----- -----. ⑧ ----- -----<u>2030</u> <u>년</u>----- ----- -----. 1. ~ 3. (현행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	---